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. 7. 16 선고 2018가단20395 판결 [명의신탁해지에 의한
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대중회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변론 종결2018. 7. 12.

판결 선고2018. 7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K 대 1263㎡ 및 L 전 2165㎡ 중 별지 표1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
관하여 별지 표2 기재 각 해당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이정호

별지